

세금

일본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현세, 시세)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납세의 의무가 있다. 복지 및 교육, 쓰레기 처리 등의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며, 야치요시에서는 시민세·현민세, 경자동차세(종별 비율), 고정 자산세 등을 과세하며 수납하고 있습니다.

1. 시민세·현민세

시민세·현민세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시민세·현민세와 회사 등의 법인에 부과하는 시민세·현민세로 구별된다.

개인 시민세·현민세는 전년 소득에 대해 이듬해의 1월 1일에 주소가 있는 시초손에서 과세. 시민세·현민세의 세액은 전년 1년간의 소득과 공제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할**과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정액으로 과세되는 **균등할**을 합친 금액.

소득이란 수입 금액에서 급여 소득 공제액, 공적 연금 등 공제액 또는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

◇시민세·현민세 계산 방법

균등할=시민세3,500엔, 현민세1,500엔

소득할=(소득 금액-소득 공제액)×10%(시민세 6%, 현민세 4%)-세액 공제

◇균등할, 소득할 모두 과세되지 않는 사람

- ①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
- ②장애인, 과부 한부모 또는 미성년자로, 전년 중의 총소득 금액이135만 엔 이하인 사람

③다음 계산에 해당하는 사람

<부양하고 있는 친족이 없는 경우>

총소득 금액≤41만 5,000엔

<부양하고 있는 친족이 있는 경우>

총소득 금액≤31만 5,000엔×(동일 생계 배우자 및 부양자 수+1)+ 28만 9,000엔

◇소득할이 과세되지 않는 사람

<부양하고 있는 친족이 없는 경우>

총 소득 금액 등≤45만 엔

<부양하고 있는 친족이 있는 경우>

총 소득 금액 등 ≤ 35만 엔 × (동일 생계 배우자 및 부양자 수 + 1) + 42만 엔

◇ 배우자 · 부양 공제 대상의 요건

총 소득 금액이 48만 엔 이하일 것.

※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친족을 부양할 때의 수속 방법

외국에 거주하는 친족을 부양하는 경우, 확정 신고 및 연말 조정 시에 친족 관계 서류, 송금 관계 서류 및 각각 일본어로 번역한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제 개정에 따라 외국에 사는 친족을 부양하는 경우, 확정 신고나 연말 정산 시에 친족 관련 서류, 송금 관련 서류 및 각각의 일본어 번역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친족 관련 서류란 현지의 출생 증명 등 부양하는 친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이나 관계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송금 관련 서류(※)란 은행의 송금 증명 등 일본에서 해외로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국외 거주 친족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부양 공제 등을 적용하는 국외 거주 친족의 각 사람별로 필요합니다.

2.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

◇ 고정자산세

매년 1월 1일 현재, 토지, 가옥 또는 상각 자산(이를 통틀어 「고정 자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된다.

◇ 도시계획세

매년 1월 1일 현재, 시가지화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

◇ 세율

고정자산세의 세율은 1.4%,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0.3%.

◇ 세액

고정 자산의 가격에 근거한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 종람 제도

매년 4월 1일부터 그 연도의 최초 납부 기한일까지 자기의 토지·가옥과 다른 토지·가옥의 평가액을 비교할 수 있다.

◇열람 제도

자기의 자산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물건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과세 내용을 밝힐 수 있다(연중 내내).

3. 경자동차세

4월 1일 현재, 시내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경자동차·소형 특수 자동차·경이륜·이륜 소형 자동차를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

◇세율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제1종(50cc 이하)·제2종 을(90cc 이하) : 2,000엔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제2종 갑(125cc 이하) : 2,400엔
- 미니카 : 3,700엔
- 경이륜(125cc 초과 250cc 이하) : 3,600엔
- 이륜 소형 자동차(250cc 초과) : 6,000엔
- 경사륜 승용 자가용 : 10,800엔

※상기 차종 이외에 소형 특수 자동차·경사륜 화물 자가용 등이 있다.

※상기 세율은 표준 세율. 차량에 따라 중과세율 및 경과세율이 되는 경우가 있다.

◇시청에서 등록, 폐차, 변경할 수 있는 차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제1종(50cc 이하), 미니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제2종 을(90cc 이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제2종 갑(125cc 이하), 소형 특수 자동차(농경 작업용, 기타)

◇등록 수속에 필요한 것

- 신규 구입 판매 증명서, 신분증명서
- 타인으로부터의 양수 폐차 신고 접수서, 양도 증명서, 신분증명서

◇폐차 수속에 필요한 것

번호판, 표지 교부 증명서, 신분증명서

◇차량을 소유한 채로 시외로 진출할 때

야치요시에서 번호판을 교부받은 것은 반드시 폐차(「야치요시」 번호의 반납) 수속을 할 것. 또한 사륜 경자동차, 경이륜(125cc 초과 250cc 이하) 및 이륜 소형 자동차(250cc

초과)의 주소 변경 등의 수속은 아래의 장소에서 할 것.

▣경자동차(사륵)

경자동차검사협회 치바 사무소 나라시노 지소

〒276-0040 야치요시 미도리가오카 니시 8-10 ☎050-3816-3115

▣125cc를 초과하는 이륵차

나라시노 자동차 검사 등록 사무소

〒274-0063 후나바시시 나라시노다이 8-57-1 ☎050-5540-2024

4. 세무 제증명의 신청

세무 제증명을 신청할 때는 창구에 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원칙적으로 사진이 있는 것)를 지참할 것. 또한 지소·연락소에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다음 표에서 확인할 것.

납세 증명 <납세과 >

증명서		신청 장소	필요한 것	수수료
시민세·현민세		시청	A 본인 또는 동일 세대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300엔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지소	· 신청인의 신분 증명	
경자동차세	계속 검사용	연락소	B 대리인(동일 세대의 친족 이외)이 신청하는 경우	무료
	상기 이외			300엔
법인시민세		시청	C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 증명·대표자 도장 또는 위임장 ※경자동차의 계속 검사용 청구의 경우 상기는 불필요	300엔
체납 처분에 관련된 지방세의 납세 증명(공익 인정의 신청 등)				

시민세 제증명 < 시민세과 >

증명서		신청 장소	필요한 것	수수료		
소득 과세 증명	소득 증명	과세 증명	비과세 증명	시청 지소 연락소	A 본인 또는 동일 세대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 증명 B 대리인(동일 세대의 친족 이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 증명 · 위임장	300엔
법인 소재 증명	경자동차 등록용 증명	상기 이외	시청			
						300엔

고정자산 제증명 < 자산세과 >

증명서	신청 장소	필요한 것	수수료					
평가 증명	공과 증명	과세 대장 기재 사항 증명	자산 증명	과세 증명	나요세초(소유자별 고정자산과세 대장) 사본	시청 지소 연락소	A 본인 또는 동일 세대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 증명 B 차지인 · 차가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 증명 · 임대 계약서의 사본 C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하는 상속인의 신분증명서 ·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상속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호적 등본 등) D 부과 기일 이후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 증명 ·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사항 증명서 또는 매매 계약서 등(인터넷 등기 정보 서비스에서 취득한 등기 정보 서류의 경우는 조회 번호와 발행 연월일이 기재된 것(100일 이내에 조회 번호가 발행되고, 미사용인 것)) E 경락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 증명 · 낙찰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 납부 기한	300엔

		<p>통지서' 및 '물건 목록'(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만 발행)</p> <p>F 경매의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의 신분 증명 · 부동산 경매 신청서 일식 <p>☆ 대리인(상기 ABCDEF 이외)이 신청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CDEF의 필요 서류 외, 위임장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도장을 날인한 것) <p>※지소 · 연락소에서는 2~3일 후에 발행</p>	
--	--	--	--

5. 소득세에 대해

소득세(국세)는 1월~12월까지의 1년 동안에 소득이 있었던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급여 소득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지만, 그 이외의 사람은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수속은 아래의 장소에서 할 것.

치바 니시 세무서

〒262-8502 치바시 하나미가와구 타케이시초 1-520 ☎043-274-2111

6. 납세 상담

시세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중에는 질병이나 실업, 사업 폐지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치요시에서는 시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사정에 따라 납부 계획을 작성하는 등의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납세과 창구로 방문하거나 전화해 주십시오.